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745

발의연월일: 2023. 5. 2.

발 의 자:김한규·김민석·김병욱

강병원 • 황운하 • 강민정

위성곤 • 윤영덕 • 김성주

신현영 • 박용진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,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 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음.

이에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, 가상자산은 「상 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 정하며,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(안 제4조 및 제6조의5) 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타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
- 15. 가상자산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

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"신용정보회사등"을 "신용정보회사등,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생 략)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	2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동산·증권·채	3
권·채무 및 지식재산권(知識	
財産權)	
가. ~ 카. (생 략)	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타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</u>
	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
	<u>가상자산</u>
4. · 5. (생 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	3
의 종류별 가액(價額)의 산정방	
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	
다.	.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5. 가상자산은 「상속세 및 증
	여세법」 제65조제2항에 따른
	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
	<u>가액</u>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5(금융거래정보·부동산정 제6조 보의 제공 및 활용 등) ① 공 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(이하 이 조에서 "재 산등록·신고"라 한다)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| 제4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33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 다)을 이용하여 금융기관(「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15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

Ⅱ6소의5(금융거래성보·무동산성
보의 제공 및 활용 등) ①
<u>신용정보회사등, 「특</u>
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
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

다)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 액에 관한 자료(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「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및 「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3 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 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 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 략)

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
② ~ ⑥ (현행과 같음)